(공개용)

▶ 손해배상, 행정처분취소 소송 등 ◀

패소 원인 분석 보고

2021. 9.

감 사 담 당 관

▶ 손해배상, 행정처분취소 소송 등 ◀

패소 원인 분석 보고

Ⅰ 분 석 개 요

□ **배경 및 목적**

최근 손해배상 소송 시 패소, 일부 패소, 화해권고 결정 등 실질적인 패소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□ **대　　상 : 소송결과 패소(일부패소), 화해결정 관련 주관부서**

□ **범　　위 : 2018. 1. 1. ~ 2021. 7. 31.**

□ **인　　원 : ○○○○ ○○○ 외 4명**

□ **기　　간 : 2021. 7. 26.(월) ~ 8. 6.(금)** 【기간 중 10일】

□ **중점사항**

○ 소송 결과 패소, 화해 권고 결정 등에 대한 원인 분석

○ 패소, 화해 권고 등 해당 업무의 적정성 여부 확인

○ 담당자 업무태만 및 소극행정 여부 확인

Ⅱ 소송현황 및 결과

□ 소송 현황(2018. 1. 1. ~ 2021. 7. 31.)

(단위:건)

소 송 분 야	소송 건수	소취하	소송결과				진행중
			승소	패소 (일부패소)	화해권고·강제조정		
					사실상패소	사실상 승소	
합 계	265	159	49 (67.1%)	15 (20.6%)	4 (5.5%)	5 (6.8%)	33
손해배상(환매권)	14	1	5	3	3	-	2
행정처분 취소 등 (세무관련)	20	2	8	1	-	-	9
행정처분 취소 등 (정보공개,영업정지 등)	162	147	6	4	-	-	5
행정처분 취소 등 (건축·공사 관련 이행강제금 등)	19	3	11	2	-	1	2
부당이득금 (사유지 도로점용 등)	35	4	17	3	-	2	9
기 타 (소유권, 구상금 등)	15	2	2	2	1	2	6

□ 소송결과

◈ 총 265건의 소송 중 소취하(159건), 진행 중(33건)인 소송 192건을 제외한 73건의 소송결과, 승소율은 67.1%(49건), 패소(일부패소)율은 20.6%(15건)이며, 화해권고·강제조정율은12.3%(9건)임.

◈ 이 중 패소(일부패소)·화해권고(사실상 패소) 된 총19건의 사례를 살펴보면,

- ▸ 공익사업 폐지에 따른 수용된 토지 **손해배상(환매권)** : 6건
- ▸ 지방세 부과, 정보공개거부처분, 방역수칙 위반 집합금지,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**행정처분 취소** : 7건
- ▸ 사유지 도로 점용에 따른 **부당이득금 반환** : 3건
- ▸ **소유권 확인 및 보험금 청구** : 3건

◈ 19건의 사례 중 행위 당시 공무원의 정책 결정 및 관련 절차 미준수, 법령 착오 적용 등의 사례는 10건으로 확인됨.

▸ **손해배상(환매권 관련) 6건 : 환매권 미통지**

- ○○○과(3건) : 패소 1건, 화해권고(사실상 패소) 2건
- ○○○과(3건) : 패소 2건, 화해권고(사실상 패소) 1건

☞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사업구간 내 동일 목적으로 사용 중이던 토지의 원래 소유주 다수가 소송 제기

☞ ○○○과, ○○○과 모두 성격상 각각 1건의 소송으로 먼저 제기된 소송의 결과가 패소함에 따라 동일 부지 나머지 소송도 화해권고(사실상 패소) 결정 됨.

▸ **행정처분(지방세부과) 취소 1건 : 송달 절차 미준수**

- ○○○과(1건) : 패소 1건

☞ 지방세(○○세) 부과는 우편(등기) 송달 후 반송된 경우, 공시송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공시송달 절차를 미준수하여 패소

▸ **행정처분(정보공개거부) 취소 3건 : 비공개 처리 법령 적용 오류**

- ○○○과(3건) : 패소 2건, 일부패소 1건

☞ 패소 2건은 ○○○○재건축 관련 정보공개 청구로 법원에서 1건으로 병합하여 진행 → 비공개 사유 부적절(패소)

☞ 일부패소 1건은 본인 토지의 무허가건물 소유자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 →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(일부패소)

Ⅲ 소송 관련 적정여부 검토

손해배상 환매권 관련

◈ 환매권 정의

○ 매도한 재물이나 수용당한 재물을 구(舊)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

○ 관련법규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제91조(환매권)

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**당해 사업의 폐지·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**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**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.**

⑥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**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** 환매권 행사기간은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.

제92조(환매권의 통지 등)

①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◈ 환매권 관련 판례

협의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**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,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, 당해 토지의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·합리적으로 판단**하여야 한다.

□ 환매권 관련 소송 결과 : 6건의 환매권 미통지가 인정됨

❍ ○○○과 : 3건 / ○○○과 : 3건

❍ **부서별로 각각 동일부지에 대한 소송임.**

- 동일 부지에 대한 다수의 환매권 소송이 첫 소송의 패소결정에 따라 동일하게 사실상 패소의 화해권고 결정됨.

□ ○○○과 소송현황

○ 소송결과: 승소 1건, 소취하 1건, 패소 1건, 화해권고 2건(사실상 패소)

연번	물건지	소 장 접수일	배 상 금	진 행 경 과
1	○○동 ○○-○○ ○○-○○	2017. ○.○.	△△△△△원	▸ 1심 승소(2019. ○. ○.) ▸ 2심 패소(2020. ○. ○.) ▸ **3심 패소**(2020. ○. ○.)
2	○○동 ○○-○○ ○○-○○	2018. ○.○.	△△△△△원	▸ 1심 승소(2019. ○. ○.) ▸ 2심 **화해권고**(2021. ○. ○.)
3	○○동 ○○-○○ ○-○○	2018. ○.○.	△△△△△원	▸ 1심 승소(2019. ○. ○.) ▸ 2심 **화해권고**(2021. ○. ○.)
4	○○동 ○-○○	2018. ○.○.	-	▸ 1심 승소(2018. ○. ○.) ▸ 2심 승소(2019. ○. ○.) ▸ 3심 **승소**(2019. ○. ○.)
5	○○동 ○○-○	2018. ○.○.	-	▸ **소취하** (2019. ○. ○.)
합 계			△△△△△△△원	

□ ○○○과 소송현황

○ 소송결과: 패소 2건, 화해권고 1건(사실상 패소)

연번	물건지	소 장 접수일	배 상 금	진 행 경 과
1	◇◇동 ○○○-○	2017. ○.○.	△△△△△원	▸ 1심 패소(2018. ○. ○.) ▸ 2심 **패소**(2018. ○. ○.)
2	◇◇동 ○○○-○	2017. ○.○.	△△△△△원	▸ 1심 패소(2018. ○. ○.) ▸ 2심 **패소**(2018. ○. ○.)
3	◇◇동 ○○○-○	2018. ○.○.	△△△△△원	▸ 1심 **화해권고**(원고승소) (2018. ○. ○.)
합 계			△△△△△△△원	

□ 추진경위 및 적정성 검토

1 총 평

◈ 2018. 1월부터 현재까지 총8건의 환매권 관련 소송 중 6건의 소송에서 환매권 발생이 인정되어 패소함.

▸ ○○○과 3건, ○○○과 3건

◈ 환매권 관련 법률은

▸ '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원소유주에게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'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,

◈ 대법원 판례는

▸ 도시계획 폐지 이후로도 당초 도시계획과 같은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되는지 고려하여 환매권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.

◈ ○○○과의 경우

▸ 도시계획시설 폐지 전에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, 폐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.

▸ 당시 환매권에 대한 질의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내부방침으로 환매권을 미통지하기로 결정함

▸ ○○○과는 해당 부지를 공익목적인 도로로 계속 이용하기 위해 내부방침에 따라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음

◈ ○○○의 경우

▸ 도시계획시설 폐지 전에 공공공지인 □□□□조성이 완료되었고, 폐지 이후에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로 변경됨.

▸ 당시 사업추진에 대한 환매권 법률자문 및 의견조회 후, ○○○과 등의 의견에 따라 내부방침으로 환매권을 미통지하기로 결정함

▸ 당시 ○○○과는 □□□□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계속 제공하기 위해 내부방침에 따라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음.

2 ○○○과

사업구간 : ○○동 ○○-○~○○-○○



1. 도시계획시설(도로) 추진과정

○ **(2001.10.10.)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**

○ **(2003.2.~2004.2.) 원고 4명의 토지 취득**

○ **(2003.11.14.) 도시계획사업구간 북측 도로개설공사 시행 방침**

- 사업구간 북측(○○동 ○○-○~○○-○○○)

○ **(2004.11.19.) 도시계획사업구간 남측 도로개설공사 발주 방침**

- 관련근거: ○○동○○주변 □□외 2건 △△△처리계획
  ○○○과-○○○호(2004.○.○.)
- 개설구간: 사업구간 남측(○○동 ○○○-○~○○○-○○)

○ **(2004.12.30.) 도시계획사업구간 일부 공사 완료**

- 사업구간 북측(○○동 ○○-○~○○-○○○) 도로 확장공사 완료
- 사업구간 남측(○○동 ○○○-○~○○○-○○) 건물 철거공사 완료

☞ 도시계획사업 남측 구간의 경우 공사대장 부존재(보존기한 경과)로 소송 시 실제 도로 공사완료 여부를 입증하지 못함.

2.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정

❍ (2004.10.20.) ○○○○ 주변 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

❍ (2005.07.29.) 정비구역 지정 제안신청(추진위→광진구)

❍ (2005.12.16.)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(區→서울시)

❍ (2006.06.23.) ○○○○주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(안) 주민공람 공고

- 공고(안) 내용 중 도시계획사업구간 폐지 내용 포함

❍ (2008.07.03.) ○○○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고시(서울시 고시)

- **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폐지**

❍ (2011.08.01.) ○○○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고시

❍ (2015.07.28.) 취득 토지 조합에 매각

3. 손해배상(환매권) 소송

❍ (2017.10.30.~2018.7.18.) [토지소유주]환매권 소송 제기(5건)

- [○○동 ○○○-○○, ○○○-○○] 1심 승소, 2심 패소, 3심 패소
- [○○동 ○○○-○○, ○○○-○○] 1심 승소, 2심 화해권고
- [○○동 ○○○-○○, ○○-○○○] 1심 승소, 2심 화해권고
- [○○동 ○○-○○○] 1심 승소, 2심 승소, 3심 승소
- [○○동 ○○○-○○] 소취하

※ 승소 1건, 소취하 1건, 패소 1건, 화해권고 2건

- 패소 및 화해권고 수용에 따라 소송 종결(배상금 : 금○○○○○원)

4. 업무처리 적정성 검토

가. 해당 구간의 실제 □□개설 여부 확인

▸ (2003.10.27.) 사업구간 북측(○○동 ○○-○~○○-○○○) 도로 공사
- 관련근거: 공사시행(○○○과○○○-○○호)

▸ (2003.12.11.) 사업구간 남측(○○동 ○○○-○○,○○) 매수
- 관련근거: 잔여지 및 잔여건물 매수 결정(○○○○-○○호)
- 매수사유: 사업 남측 구간에 저촉·편입되는 주택 소유주 매수 신청

▸ (2004.11.19.) 사업구간 남측 도로개설 공사 발주
- 관련근거: 시설공사 발주 방침(□□ □□주변 □□외 2건)
[○○○과-○○호(2004.○.○.)]

▸ (2004.12.30.) 사업구간 도로개설공사 일부 완료
- 관련근거: 2004년 □□공사 대장(수기문서)
- 사업구간 북측(○○동 ○○-○○○, ○○○,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 도로 확장공사 완료
- 사업구간 남측(○○동 ○○○-○○~○○○-○○) 건물 철거공사 완료

▸ (2005.12.07.) 사업구간 남측 도로공사 자료 제출
- 관련근거: 2005년 도로공사 자료제출[區→서울시(○○○과-○○호)]
- 사업구간 남측(○○동 ○○○-○○~○○○-○○) □□ 확장공사 위치도 명시

※ 도로 미개설 구간: 사업구간 중간지점(○○동 ○○-○○○, ○○○-○)
- 미개설 사유 : 건물주의 반대로 철거가 진행되지 못함.

➡ **소송 구간에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나, 입증 자료가 부족함**

○ **사업구간 중 승소구간: [북측]○○동** ○○-○~○○-○○○
- 공사발주 및 공사완료 문서(2004년 공사대장) 존재

○ **사업구간 중 패소구간: [남측]○○동** ○○○-○~○○○-○○
- 공사발주 문서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대장은 보존기한 경과로 부존재하였고,
- 전체 도로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도로개설 고시를 실시하지 않음

나. 법률 및 판례 검토

◈ **2001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구간이 2008. 7월 폐지됨에 따라 법률상 사업구간 전체는 환매권 통지 대상에 해당 됨.**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<환매권>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·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.

◈ **하지만 판례는 단순 법률 적용보다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**

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'필요 없게 되었을 때'라고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한다.

협의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**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,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,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,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·합리적으로 판단**하여야 한다.

(출처 :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다36835 판결)

➡ **관련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모든 구간에서 환매권이 발생되나, 판례는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.**

- 전체 사업구간 중 사업구간 북측은 2009년과 2018년에 제기된 소송에서 환매권 통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함.
- 도로가 개설되고 공공의 목적으로 수년간 사용되고 있던 도로가 도시계획 폐지 결정만으로 필요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음.

다. 환매권에 대한 검토여부 확인

○ (2007.3.~) 환매권 관련 진정민원 제기(3회) ⇒○○○과 : **환매불가**

○ (2008.3.31.)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제기 ⇒권익위 : **환매불가**

> 준공된 도로가 3년 이상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 당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지 않아 환매 불가

○ (2008.11.27.) [토지소유주]환매권 관련 소송 제기(○○동 ○○-○○○)

○ (2008.12.) 환매권 성립여부 법률자문 및 국토해양부 질의

- 법률자문 결과 : 환매권 성립 의견 (2008.12.15.)
- 국토해양부 회신 결과 : 환매권 성립 의견 (2008.12.16.)

▸ 법적으로는 환매권 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됨.

다만,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최종 판단하도록 함.

○ (2009.02.06.) 환매권 소송 진행 후 패소 시 환매 추진 결정

> ☞ 해당 토지가 공익목적(도로)상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
> (검토 부서 : ○○○과)

○ (2009.12.31.) 소송 결과 광진구 승소

소송 승소에 따라 전체 사업구간 환매권 미통지 결정

➡ **환매권 검토 후, 환매권 미통지 결정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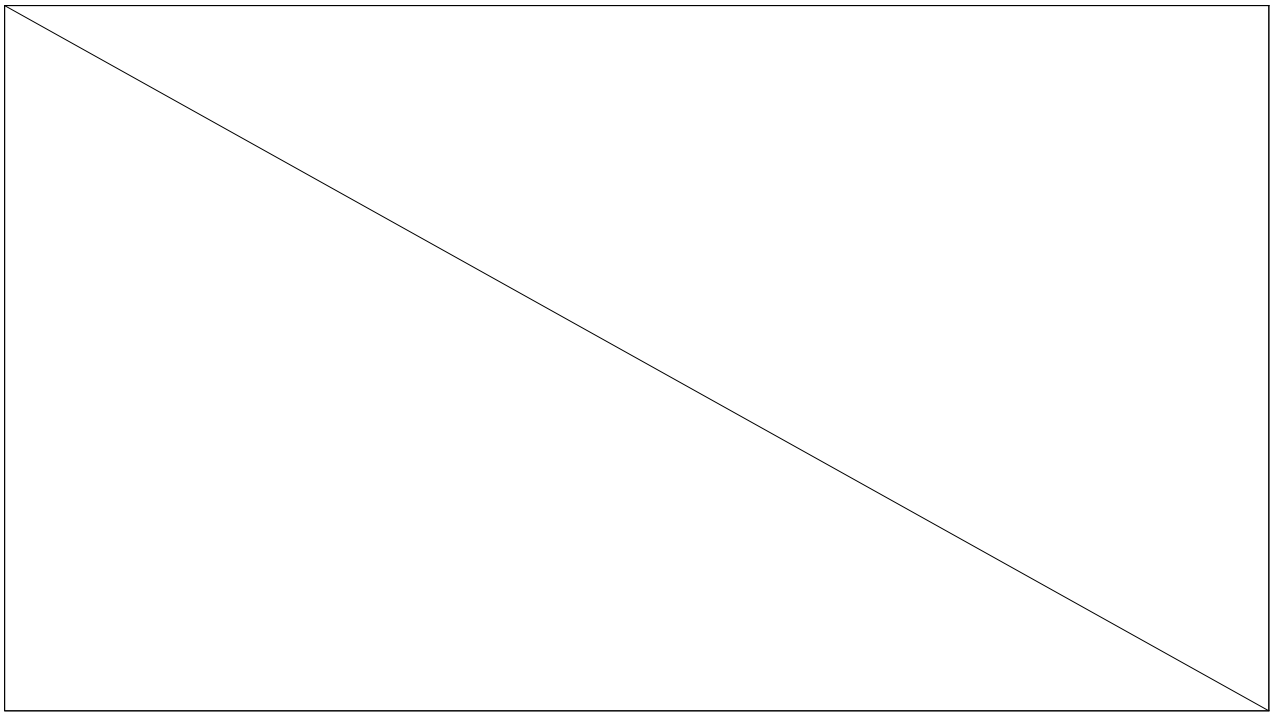
▸ 해당 토지가 수년 동안 주민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정에 따라, 환매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.

3 ○○○과

사업구간 : ○○동 ○○○-○○, ○○

☆공개공지 :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**소규모 휴식시설**[건축법]

☆공공공지 : 환경의 보호, 경관의 유지, 재해대책,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**일시적인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**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



1.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추진과정

○ **(2002.03.22.)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결정**

○ **(2003.3.~2003.5.) 원고 4명의 토지 취득**[취득액 : 총 ○○○○○○○원]

○ **(2003.12.26.) 공공공지(○○동 □□□□□□) 조성 완료**

2.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

○ **(2005.01.31.) 민영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**

- 사업위치: ○○동 ○○○-○○외 55필지(사업위치 내 공공공지 포함)

○ **(2005.2.~2005.7.) 민영주택건설사업신청에 따른 협의**

○ **(2005.07.05.)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**

○ **(2005.11.17.) 2005년 제○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(조건부 동의)**

- 도시계획상 공공공지 부지를 공개공지로 개방

○ **(2006.06.15.)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**

- 공공공지(□□□□)를 매각하고 별도의 공공공지를 확보

○ **(2006.06.15.) 공공공지(□□□□) 용도폐지 계획 수립**

○ **(2007.07.16.)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변경(폐지) 결정**

-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

○ **(2008.03.25.) 취득 토지 사업시행자에 매각**[매각액 : 총◯◯◯◯◯◯◯원]

- 기존 공공공지(□□□□) 부지는 공개공지로 지속 사용

3. 손해배상(환매권) 소송

○ **(2017.03.06.) 소송 제기 (원고 ○○○외1 ○○동 ○○○-○○)**

- 소송결과 1심 패소, 2심 패소 (배상금 △△△△△△△원)

○ **(2017.05.11.) 소송 제기 (원고 ○○○, ○○동 ○○○-○○)**

- 소송결과 1심 패소, 2심 패소 (배상금 △△△△△△△원)

○ **(2018.02.05.) 소송 제기 (원고 ○○○, ○○동 ○○○-○○)**

- 소송결과 1심 화해권고 (배상금 △△△△△△△원)

※ 2심 패소 및 화해권고 수용에 따라 소송은 종결

- 배상금 지급 완료(배상금 △△△△△△△원)

4. 업무처리 적정성 검토

가. 법률 및 판례 검토

◈ 2002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업 구간이 2007년 7월 폐지됨에 따라 **환매권 통지 대상**에 해당 됨.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제91조<환매권> ⑥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**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** 환매권 행사기간은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.

제4조<공익사업>
3. **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** 청사·공장·연구소·시험소·보건 또는 문화시설·공원·수목원·광장·운동장·시장·묘지·화장장·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

➡ 주민의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한 □□□□(공공공지)을 공개공지로 변경하는 것은 휴식시설 조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공익사업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,

▸ 법원은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개공지 조성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

나. 환매권에 대한 검토여부 확인

○ **(2007.08.17) 환매권 성립여부 법률자문 등 검토**
- 당시 ○○○과 법률자문 결과 : 환매권 성립 의견
- 사업시행자측 법률자문 결과 : 환매권 미성립 의견
- 당시 ○○○과 의견 : 환매권 미성립 의견

⇨ **다수 의견에 따라 최종 환매권 미통지 결정**

➡ **환매권 검토 후, 환매권 미통지 결정**

▸ 공개공지로의 변경은 공익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최종 미통지 결정

지방세 부과 관련

□ ○○○과 : □□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

연번	원 고	소 장 접수일	소송가액	진 행 경 과
1	○○○ (국적:□□)	2018. ○. ○.	△△△△△△원	▸ 1심 패소 종결(2019. ○. ○.)

※ 원고에 대한 □□세 부과기간: 20○○년~20○○년

□ 소송물건 : ○○동 ○○○-○○○외 9필지

□ 주요 사건경위

○ **(2008. 10. 10.) 소송 물건지 소유자(원고의 ○) 사망으로 법정상속인 자녀 4명 상속재산협의서 작성**

- 법정 상속인 ○명 중 원고의 ○○(○○○)가 단독 상속자로 협의

○ **(2009. 4. 2.) 단독 상속자가 □□세 신고하였으나 상속 미등기 및 □□세 미납**

○ **(2011. 12. 26.) 법적상속에 따라 대위 등기(○○세무서)**

- 단독 상속자 체납에 의한 압류처분을 위한 대위 등기 조치

○ **(2012.~2018.) 대위등기에 따라 원고에게 □□세 부과**

○ **(2018. 12. 6.) 원고 소송 제기(□□세 부과 취소)**

- 토지소유자가 아님에도 법정 지분율대로 부과는 무효
- 납세고지서의 송달 하자가 있어 '당연 무효' 주장

○ **(2019. 9. 5.) 1심 패소 → 종결**

☞ 원고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 미발생

○ **□□세 부과 및 납부 현황**

- 2019. 5. 단독 상속자(○○○)에게 2014년 귀속 □□세 수시분 부과
- 부과금액 : ○○○○○○원
- 납부여부 : 미납(체납)

□ 주요 쟁점사항

○ 물건지 원 소유주(원고의 ○)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 자녀 ○명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거 단독 상속하기로 한 자(원고의 ○○)가 상속 미등기로 인해 법정 지분율대로 ○명이 대위등기 된 경우에 납세 의무자 판단 여부

○ 원고가 부과 □□세에 대해 일부 납부하였음에도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당연 무효 여부

□ 판결 요지

▸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, 이 사건 처분은 아직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된 바 없으므로 무효

□ 패소원인 : 송달 효력 미발생

○ □□세 부과시 납세고지 송달관련 절차 미준수(공시송달)

○ 송달 관련 준수사항 여부를 살펴보면

▸ **지방세기본법 제28조~제33조 규정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, 거소 등에 교부·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며, 교부·우편 등의 방법에 따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.**

▸ **그러나 ○○○는 △△ 국적의 원고에게 □□세 부과시 우편의 방법으로만 송달하였고 반송 등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공시송달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공시송달 절차 없이 □□세 부과**

정보공개 거부처분 관련

□ ○○○과 : 패소 2건, 일부 패소 1건 진행 경과

연번	원 고	소 장 접수일	정보공개청구 내용	진 행 경 과
1	○○○ 외 1명	2017. ○.○.	□□구역 관련 ○○○○ 재건축 사업승인서류 일체 (사업시행인가조건)	▸ 1심 패소 (2018. ○. ○.) → 피고 항소(2018. ○. ○.) ▸ 2심 패소(2019. ○. ○.) → 일부 각하 그 외 패소 (병합 판결)
2	○○○ 외 ○명 (○○○○)	2017. ○.○.	□□구역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선정 자료 등	
3	○○○ (○○○ ○○)	2020. ○.○.	○○동 ○○-○ 무허가 건물 확인원 및 소유자 인적사항	▸ 1심 일부 패소(2021. ○. ○.) → 상소 포기 및 종결

□ 주요 사건 경위

○ **(2017. 9. 5.) □□주택재건축 사업승인 서류 정보공개 요청**

(정보공개 요청자 : ○○○)

- 청구내용 : □□구역 재건축 사업승인 서류 전체

○ **(2017. 9. 15.) ○○○과 비공개 결정**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를 안내

> **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(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)**
>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,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○ **(2017. 10. 12.)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**

○ **(2017. 10. 20.) □□주택재건축 선정 자료 정보공개 요청**

[정보공개 요청자 : 법무법인 ○○(대리인)]

○ **(2017. 11. 1.) ○○○과 비공개 결정**

- 요청자가 정보공개 소송 대리인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 결정

○ **(2017. 11. 10.)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(법무법인 ○○○)**

○ **(2018. 11. 8.) 소송 2건 병합하여 1심 패소 → 항소**

○ **(2019. 5. 31.) 2심 패소 → 종결**

☞ 정보공개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도시정비법은 비공개사유 미해당

○ **소송결과 패소함에 따라 청구자에게 정보공개 완료**

□ 주요 쟁점사항

○ 정보공개거부처분 시 비공개 결정 적정 여부

□ 판결요지

▸ 정보공개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도시정비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라 볼 수 없으며,

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 검토를 통해 제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여야 함.

□ 패소원인 : 비공개 결정 시 법령 착오 적용

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 없는 법령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)을 비공개 사유로 제시

▸ 공개·비공개 혼합 정보의 경우 공개 가능한 정보까지 비공개 처리

※「공공기관의 정보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주요 내용

제3조(정보공개의 원칙)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) ④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~(중략)~ 비공개 이유와 불복(不服)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제14조(부분 공개)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
※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주요 내용

제81조(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)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,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그 외 소송사건 패소 원인 분석

연번	소송 건명 (주관부서)	소송 결과	패소 · 화해권고 결정 원인
1	부당이득금 (○○○과)	2심패소	• 소송물건지: ○○동 ○○-○○ • 도시계획 시설 지정행위 없으나 1992년(성동구) 도로포장 등 점유 사실 인정됨. • 배상금: △△△△△△△원
2	부당이득금 (○○○과)	일부패소	• 소송물건지: ○○동 ○○○-○○외 5필지 • 장기 미집행시설(1972년 도시계획)에 대해 수도설치, 도로포장 등 사실상 점유 인정 • 배상금: △△△△△△△원
3	부당이득금 (○○○과)	일부패소	• 소송물건지: ○○동 ○○○-○외 2필지 • 장기 미집행시설(1972년 도시계획)에 대해 수도설치, 도로포장 등 사실상 점유 인정 • 배상금: △△△△△△△원
4	소유권확인 (○○○과)	1심패소	• 소송물건지: ○○동 ○○○-○○○ • 장기미집행시설(1968~1973)에 대한 소유권 광진구 무상귀속 불인정
5	구상금 (○○○과)	일부패소	• 원 고: ○○○○공단 • 광진구 소속 공공근로자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에 대해 가해자인 구청 직원(운전자)의 책임 일부 인정됨 • 구상금은 구청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 완료
6	구상금 (○○○과)	화해권고	• 원 고: ○○○○보험(주) • 지역축제 종료 직후 인근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시 구청의 책임 일부 인정 • 구상금: △△천원
7	집합금지처분 취소 (○○○과)	1심패소 ※항소 진행중	• 원 고: ○○○○ • 소송물건지: ○○○로○○길 ○○(지하1층, 지상1층) •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은 인정되나 최초 처분시 집합제한보다 집합금지는 과도함
8	이행강제금 취소 (○○○과)	1심패소 2심패소	• 원 고: ○○○○○ • 소송물건지: ○○동 ○○○ • 원고의 정당한 사유를 감안하지 않고 지침에 따라 다른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한 것은 과도한 조치 • 소송 이후 위법사항 치유 완료
9	이행강제금 취소 (○○○과)	일부패소	• 원 고: ○○○ • 소송물건지 : ○○동 ○○○-○○ • 용적률 초과한 높이 측정 시 측정 지점에 따라 오차 발생 가능성 존재하여 일부 불인정 → **전체 △△백만원 중 △만원 불인정(사실상 승소)**

Ⅳ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 검토

□ 관련규정 :「국가배상법」제2조

제2조(배상책임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, 「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(求償)할 수 있다.

□ 관련 판례(대법원 2003. 2. 11. 선고, 2002다65929, 판결)

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,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.

□ 검토결과

◈ 손해배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환매권 미통지의 경우, 최근 소송 결과 패소함에 따라 당시 미통지 결정이 부적정한 사실은 인정되나,

- **당시 환매권 성립 관련 법률자문과 정책 결정자 이상의 사전 검토 이행과 그에 따라 미통지 결정 한 점**
- **환매권 발생 사유인 도시계획결정사업이 폐지되었으나, 사업구간 내 제기된 소송에서 일부 구간은 승소, 일부 구간은 패소한 점**
- **환매 관련 법령 미숙지, 검토 미이행의 업무 태만의 과실이 없는 점 등**

◈ 당시 관련 공무원의 '고의' 또는 '중과실'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상권 청구 불가 판단됨.

Ⅴ 제도개선 사항

1 환매권 발생 사유 시점 도래시마다 환매권 발생여부 검토

관련규정

○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

관 련 규 정

- **제91조(환매권)** ① 공익사업의 폐지·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(이하 이 조에서 "취득일"이라 한다)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(이하 "환매권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. **<개정 2021. 8. 10.>**

  1. 사업의 폐지·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: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·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·변경 고시가 있는 날
  2.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: **사업완료일**

- **제92조(환매권의 통지 등)**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현황 및 문제점

○ 현재 도시계획결정사업(공익사업) 폐지·변경 시점에 대부분 환매권 검토

○ 환매권에 대한 소송 시 법원 판결은 단순 공익사업의 폐지·변경만으로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·변경 이후 토지가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동안에는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, **당해 사업에 실제 이용되었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야 한다**고 판시하고 있음.

○ 공익사업의 폐지·변경 시점에 환매권을 검토하여 최종 미통지결정한 사례는 있으나 이후 실질적인 공익목적의 토지 사용 중단 시점에는 환매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추후 소송 제기 시 패소할 가능성이 있음.

개선방안

○ 환매권이 성립될 수 있는 사유 발생 시 마다 법률자문 등 검토

- **(기존)** 도시계획결정사업(공익사업)의 폐지 또는 변경 시점
- **(추가)** 재개발·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또는 사업시행인가(실시계획인가) 시점

※ 재개발·재건축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 또는 협의 취득된 토지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

- **(추가)** 당초 도시계획결정(도로, 공원, 체육부지 등)의 목적대로 사용 중이던 토지가 실질적으로 사용 중단된 시점

검토부서 : 도시계획사업(공익사업) 관련 부서

Ⅵ 분석결과 조치(안)

□ **환매권 소송 관련 제도개선 사항 : 전부서 '통보'**

○ 패소 사례 전 부서 공유하여 향후 유사사례 방지

□ **지방세 및 정보공개거부처분 관련 소송 : 관련부서 '○○요구'**